



: 2020-06-09

## 서울고등법원

### 제4민사부

### 판 결

사 건 2020나2004872 손해배상(지)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A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단천

담당변호사 김도년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1. 주식회사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박시진, 이은우

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10. 선고 2016가합565681 판결

변론종결 2020. 4. 2.

판결선고 2020. 5. 7.

### 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항소취지

####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2.부터 2020. 1.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나. 피고들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이 유

### 1. 기초사실

이 법원의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이 사건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하여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저작권 침해로 인해 발생한 손해로서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권리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정품 이용료의 합계액 중 일부인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판단

###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1 내지 5호증, 을 제8 내지 24호증, 을 제34 내지 37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제1심법원의 I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종합하면, 피고 C은 피고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그 업무상 직원들의 이 사건 프로그램 불법 복제 방지 등에 관한 주의의무를 부담하는데도, 직원이 피고들의 업무에 필요하였던 이 사건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하여 일부 업무상 이용하는 데 대하여 대체 정품을 구입하거나 무단 복제의 점검, 사전방지 교육 등 관리·감독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프로그램 무단 복제에 따른 원고의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1)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른 손해액 산정 가부

가)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은 저작재산권자 등이 그 권리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권리의 행사로



: 2020-06-09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이라 함은 침해자가 프로그램저작물의 사용 허락을 받았더라면 사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다50552 판결 참조).

나) 그런데, 위 각 증거들에 갑 제17, 23, 28, 30, 31, 35, 37호증, 을 제25 내지 33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법원의 H연구원, 한국지질지원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대한 각 사실조 회결과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 들만으로는 이 사건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개별 모듈 전부의 이용료를 산술적으로 합산 한 금액(이하, '원고 주장 정품 이용료'라 한다)이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았더라면 그 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원고가 저작권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명확히 산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프로그램은 별지 기재와 같이 다양한 구성과 기능을 갖춘 복수의 하위 모듈의 묶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사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반드시 전체 모듈을 구매할 필요가 없고, 소비자의 용도에 필요한 개별 모듈들 중 일부만을 선택 하여 구매할 수 있으며, 개별 모듈의 사용료는 각 모듈별로 책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 건 프로그램의 판매는 구매자가 한 번 사용료를 지급하면 그 프로그램을 영구적으로 사 용할 수 있는 영구사용 방식뿐 아니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사용료를 지급하고 사용하 는 기간제 구독 방식으로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전체 모듈은 상당한 고가이고 매우 다양한 기능을 포 함하고 있어서 실제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프로그램에 대한 국내 라이선스계약 체결



권한을 부여받은 K 유한회사는 주로 기본 모듈에 사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기능을 가진 일부 개별 모듈을 추가하여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국내에서 전체 모듈을 포함하는 풀 패키지에 대한 라이선스계약이 체결된 사례를 찾을 수 없다.

(3) 원고가 책정한 프로그램 정품 이용료에는 정품 사용자만을 위한 일정 기간의 무상보증과 유지보수 혜택 등이 포함되어 있고, 여러 모듈을 한꺼번에 구입할 경우 극히 일부의 경우라 하더라도 개별 모듈 이용료의 합산액에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최종 이용료를 정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들은 신호처리와 관련한 장비 개발을 주요 사업 분야로 하여 주로 장비 안에 들어가는 프로그램 제어 기관 또는 회로 기관 등을 제작하는데, 그 업무영역상 이 사건 프로그램 전체 모듈의 모든 기능이 필요하지 않고, 이 사건 프로그램의 개별 모듈 구성(별지) 중 주로 신호처리 분야, 이미지 프로세싱 분야, 테스트 및 측정 분야 등의 모듈이 필요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프로그램을 정식으로 구매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의 업무에 필요한 세부적인 개별 모듈만을 선택적으로 구매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5) 피고들은 라이선스계약에 기초한 통상적인 설치 과정에 따라 기본 모듈과 개별 모듈별로 이 사건 프로그램을 설치하였던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저작권 보호를 무력화시킨 불법 복제물을 통째로 복제하다보니 전체 모듈을 설치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업무 수행에 모듈 전체를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복제한 것으로 보이는 않는다.

다) 따라서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라 피고들의 이 사건 불법 복제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을 산정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른 손해액의 산정

가) 앞서 본 바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들의 이 사건 프로그램들에 관한 저작권 침해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인데, 이 사건 변론에 현출된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실제 입은 손해액이나 피고들이 저작권 침해로 얻은 이익 또는 원고가 저작권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라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인정되는 상당한 손해액을 산정하기로 한다.

나) 앞서 본 증거들과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의 이 사건 프로그램 무단 복제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75,000,000원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1) 피고들이 복제한 이 사건 프로그램들은 컴퓨터에 한 번 설치를 하면 그 프로그램을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버전이다. 이러한 영구사용 방식의 프로그램은 구매자가 정해진 이용료의 지불을 완료함으로써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프로그램 판매자로서는 최초 구매단계에서 라이선스를 부여하기만 하면 구매자의 프로그램 이용 여부나 프로그램 이용량과 관계없이 프로그램 이용료에 상응하는 일정한 이득을 취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설령 피고들이 그 주장과 같이 현재까지 실제로 이 사건 프로그램 중 'F'와 'G'를 그 업무에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업무용 컴퓨터에 복제되어 있는 상태만으로도 피고들은 직원들이 언제라도 위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이익을 얻었고, 원고는 그 이용가능성에 상응하는 재산적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들은 I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 업무 수행 목적으로 2009년과 2013년에 송부받은 총 4개의 D 파일을 읽기 위해 이 사건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는데, 위 파일



에는 피고들이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기본모듈과 'Signal Processing Toolbox(SG)' 모듈 외에도 'Mapping Toolbox' 등 다른 모듈이 있어야 읽을 수 있는 함수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들의 직원 J의 컴퓨터에는 그 보다 앞선 2005년 무렵부터 이 사건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저장된 D 파일도 516개 정도에 이른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이 사건 프로그램을 오로지 I 주식 회사의 위 송부파일을 읽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한 것이 아니고, 그 전부터 계속 피고들의 업무 분야와 관련 있는 용도에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3) K 유한회사는 2016. 6. 무렵부터 2019. 1. 무렵까지 D 기본 모듈 1개에 여러 개의 개별 모듈을 추가하여 구성된 L 프로그램 1세트(발주서 기재 'D' 표시 기준)를 3,200,000원에서 51,700,000원까지 판매하였고, 그 구매업체들 중 피고들과 유사한 업무분야에 속할 여지가 있어 보이는 업체에 이 사건 프로그램 8세트를 합계 124,850,000원에, 이 사건 프로그램 5세트를 합계 99,650,000원에 판매하기도 하였다.

#### 다.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4. 1. 22.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0. 1. 1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 2020-06-09

항소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홍승면

                 판사      박지연

                 판사      김선아





**별지 <활용분야별 D 프로그램 제품군>**

| 활용 분야                            |                                    |   |
|----------------------------------|------------------------------------|---|
| <b>신호 처리</b>                     | <b>RF 및 종합신호</b>                   | <b>자동차</b>  |
| Signal Processing Toolbox        | Antenna Toolbox                    | Model-Based Calibration Toolbox                     |
| Phased Array System Toolbox      | RF Toolbox                         | Powertrain Blockset                                 |
| DSP System Toolbox               | RF Blockset                        | Vehicle Dynamics Blockset                           |
| Audio Toolbox                    | Mixed-Signal Blockset              | Automated Driving Toolbox                           |
| Wavelet Toolbox                  | SerDes Toolbox                     | IEC Certification Kit (for ISO 26262 and IEC 61508) |
| <b>이미지 프로세싱 및 컴퓨터 비전</b>         | <b>무선 통신</b>                       | Vehicle Network Toolbox                             |
| Image Processing Toolbox         | Communications Toolbox             | AUTOSAR Blockset                                    |
| Computer Vision Toolbox          | WLAN Toolbox                       | RoadRunner  |
| <b>제어 시스템</b>                    | LTE Toolbox                        | RoadRunner Asset Library                            |
| Control System Toolbox           | 5G Toolbox                         | <b>항공우주</b>   |
| System Identification Toolbox    | <b>자율 시스템</b>                      | Aerospace Blockset                                  |
| Predictive Maintenance Toolbox   | Automated Driving Toolbox          | Aerospace Toolbox                                   |
| Robust Control Toolbox           | Robotics System Toolbox            | DO Qualification Kit (for DO-178)                   |
| Model Predictive Control Toolbox | Navigation Toolbox                 | <b>계산 금융</b>  |
| Fuzzy Logic Toolbox              | ROS Toolbox                        | Econometrics Toolbox                                |
| Simulink Control Design          | Sensor Fusion and Tracking Toolbox | Financial Toolbox                                   |
| Simulink Design Optimization     | RoadRunner                         | Datafeed Toolbox                                    |
| Reinforcement Learning Toolbox   | RoadRunner Asset Library           | Database Toolbox                                    |
| Motor Control Blockset           | <b>FPGA, ASIC 및 SoC 개발</b>         | Spreadsheet Link (for Microsoft Excel)              |
| <b>테스트 및 측정</b>                  | HDL Coder                          | Financial Instruments Toolbox                       |
| Data Acquisition Toolbox         | HDL Verifier                       | Trading Toolbox                                     |
| Instrument Control Toolbox       | Wireless HDL Toolbox               | Risk Management Toolbox                             |
| Image Acquisition Toolbox        | Vision HDL Toolbox                 | <b>계산 샘플링</b>                                       |
| OPC Toolbox                      | Filter Design HDL Coder            | Bioinformatics Toolbox                              |
| Vehicle Network Toolbox          | Fixed-Point Designer               | SimBiology  |
| ThingSpeak                       | SoC Blockset                       | <b>코드 검증</b>  |
|                                  |                                    | Polyspace Products for Ada                          |
|                                  |                                    | Polyspace Bug Finder                                |
|                                  |                                    | Polyspace Bug Finder Access                         |
|                                  |                                    | Polyspace Bug Finder Server                         |
|                                  |                                    | Polyspace Code Prover                               |
|                                  |                                    | Polyspace Code Prover Access                        |
|                                  |                                    | Polyspace Code Prover Server                        |